

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제2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1. 4. 30. ~ 5. 6.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5. 6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myungjee1103@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457호
----------	--------

발의연월일 : 2021. 4. 30.

발 의 자 : 김병권 · 장숙희
나안수 의원

1.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의 효율적 운영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허가 조항을 일부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 사용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상가번영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에 후단 신설(안 제5조제3항)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5. 예산상황 : 해당없음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에 다음과 같이 후단을 신설한다.

다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인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허가) ① · ② (생략) ③ 시장 사용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제5조(허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다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인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